

의안번호	제649호
의결 연월일	2017년 7월 14일 (제357회)

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출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7년 7월 4일

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	64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7월 4일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 :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

나. 활동기간 :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위 원 수 : 13명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1년씩 상설로 구성·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,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【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8조(특별위원회)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과 교체선임) ①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한다.

④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】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,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

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72조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.

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.